

전상자 분류기준표(제60조의23제1항제4호 관련)

구 분	기준번호	기준 및 범위
전상자	1-1	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
	1-2	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입은 사람
	1-3	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람
	1-4	1-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, 장비, 물자,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적의 행위로 상이를 입은 사람
	1-5	적이나 반국가단체(이에 동조한 사람 포함)에 의한 테러·무장폭동·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입은 사람
	1-6	적의 포로가 되어 수용시설에서 상이를 입은 사람(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은 제외한다)
	1-7	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